

의안번호	2200920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4.06.27.
추계번호	24D1294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 라목 및 제32조 의2(수습 및 복 구)제2항부터 제 6항 신설	민방위사태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사태를 추가하고, 해당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액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-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- 신체적 부상·장애 및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- 정신적·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-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 안정 및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¹⁾까지의 지원 -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	재량규정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

①~② 생략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생략

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
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
4. 자금의 융자, 보증, 상환기한의 연기,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

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
5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

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
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 라목 및 제32조 의2(수습 및 복 구)제2항부터 제 6항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민방위사태의 범위 확대 및 수습 및 복구(안 제2조 라목 및 제32조의2 제2항부터 제6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사태를 민방위사태의 범위에 추가하고 해당 사태에 따른 피해액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, 응급조치,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, 구호조치,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이 심의·결정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음
 - － 개정안은 민방위사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사태를 추가하고 생명·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지원, 사망하거나 장애 등의 발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다만,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사태 중 민방위사태로 간주하는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, 향후 발생 건수, 생명·신체 또는 재산피해 종류별 건수, 종류별 평균 피해액 및 국가의 지원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개정안의 취지는 2024년 5월28일부터 6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

오물풍선 살포와 그에 따른 차량 파손, 항공기 운항 지연 등의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임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향후 민방위사태의 범위가 현행법보다 확대될 수 있고 피해액 지원,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사태 중 민방위사태로 선포되는 건수, 해당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종류별 건수와 평균 피해액, 국가의 지원을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,630여개가 확인되었고 6월 18일 기준 12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는 검토 중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